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78

발의연월일: 2020. 8. 7.

발 의 자 : 이원택・양정숙・안규백

김수흥 • 한병도 • 김경만

양이원영 · 이용호 · 신정훈

이상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,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,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2020 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,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현행대로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농축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의2제1항, 제69조의3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제85조의10제1항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"2020년"을 각 각 "2023년"으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0년"을 각각 "2023년"으로 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	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
소득세의 감면) ① 축산에 사	소득세의 감면) ①
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	
(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	
"축사용지"라 한다) 소재지에	
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	
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	
<u>2020년</u> 12월 31일까지 양도함	<u>2023년</u>
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	
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	
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	
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	
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	
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	
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	
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	
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	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	

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69조의3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7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<u>2020년</u> 12월 31일까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

·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9조의3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
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
<u>2023년</u>

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·초지·산림 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용 토지등· 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· 초지·산림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 용 토지등·염전 또는 축사용지 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 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 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

<u>.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
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
면) ①
<u>20</u>
<u> 23년</u>

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1. ~ 3. (생 략)

② ~ ⑧ (생 략)
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 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)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[해당금액이 20

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
세 과세특례) ①
2023년

억원(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 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8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85조의10(국가에 양도하는 산 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
① 거주자가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 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, 이하 이 항에서 "산지"라 한다)로서 2년 이상 보유한
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5조의10(국가에 양도하는 산
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
①

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(생략)
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·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 략)

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
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

<u>2023년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
대한 비과세)
<u> 2023년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
①

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2 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 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"이라 한다)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을 취 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 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(양도하는 시점의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

-2023년
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<

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 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)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 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 도하고 「소득세법」 제105조 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「소 득세법」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 을 수 있다.

⑥ ~ ⑧ (생 략)
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이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				<u>2</u>	<u>023년</u>	
		-				
	6 ~		(현행	과 같	습)	
제		8			·음)]세율의	적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	[세율의	적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양	[세율의	적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양	[세율의	적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양	[세율의	적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양	[세율의	적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양	[세율의	적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양	[세율의	적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양	[세율의	적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 영	[세율의	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 영	· 세율의	
제	105조	- 8 と(早7	가가치	세 영	· 세율의	

- 1. ~ 6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 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 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 - 1. ~ 12. (생 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, 제16호는 2016년 12
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
<u>2023</u>
<u>년</u>
1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
<u>2023년</u>

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,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,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.

- 1. ~ 20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
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석유류(「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 유제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"면세유"라 한다)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, 교통·에 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 는 것에만 적용하고, 제2호는 2

1. ~ 20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및
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
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
구가가시세 등의 심턴 등) ①
,
<u>2</u>

<u>020년</u>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.

1. • 2. (생략)

② ~ ② (생 략)

<u>023년</u>-----

-----.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② (현행과 같음)